

#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31
----------	-----

제출년월일 : 2021. 11.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인근 부지에 건축된 어울림 체육센터를 동센터의 부속된 시설로 설치 및 운영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센터의 세부시설의 내용 개정(안 제4조 별표1)

시설명	세부시설	면적	위치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 복지센터 - 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프로그램실, 창고 등	1,426.78㎡	평창군 진부면 진벌1길 144-19
	○ 어울림 체육센터 - 경기장, 다목적실, 주방 등	498.99㎡	평창군 진부면 경강로 3817

나. 사용허가 및 신청내용 일부 개정(안 제8조 제2항, 제3항)

다. 어울림 체육관 사용료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9조 제2항 별표 2)

라. 사용료 반환기준 개정(안 제9조 제4항 별표3)

마. 일부 문구의 명확화 및 오류 개정(안 제11조 제1항, 제2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인건비, 운영비 등 83,060천원 반영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1.10.13. ~ 2021.11.2.) 결과 : 의견제출 없음
- 2) 규제심사 : 비규제 대상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센터의 명칭·세부시설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일반기관·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허가사항을 변경(취소·해지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제2항의 사용허가 신청서 및 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허가여부와 사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취소·해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 이외의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개시일 전까지 납부 (제4항에 따른 반환 방법도 또한 같다)해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해당 수탁자가 그 징수를 대행할 수 있다.
- ④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중 “공개모집한다”를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위탁운영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위탁운영자(이 조례에서 “수탁자”라 한다)”를 “수탁자”로 한다.

별표를 삭제하고, 별표 1부터 별표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어울림 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① 이 조례의 시행 후 센터에 부속(附屬)된 어울림 체육센터(이하 “어울림 체육센터”라 한다)의 관리 운영에 관해서는 제11조제1항 및 제17조제2호에 따라 선정되어 센터를 위탁 운영중인 수탁자의 위탁업무에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해당 위탁업무에 이를 추가하는 변경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된 어울림 체육센터의 위탁기간은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위탁기간과 함께 만료된다. 재위탁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설치 및 위치) ① (생 략)</p> <p>② 센터의 위치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진별1길 144-19(상진부리 245-23)에 둔다.</p> <p>제8조(사용허가 및 신청 등) 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일반기관·단체 등은 그 사용예정 10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해당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허가여부를 해당 신청기관·단체 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신청과 통지는 군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제3항에서 또한 같다.</p> <p>③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일반기관·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p>	<p>제4조(설치 및 위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센터의 명칭·세부시설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p> <p>제8조(사용허가 및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일반기관·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허가사항을 변경(취소·해지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군수는 제2항의 사용허가 신청서 및 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허가여부와 사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p>

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해지)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기일 전까지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취소·해지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1. 변경: 사용예정 7일 전
2. 취소 또는 해지: 제9조제4항 각 호의 기일 전

④ ~ ⑥ (생략)

제9조(이용료 및 사용료) ① (생략)

② 사용자는 해당 사용예정 7일 전까지 별표의 사용료를 군수에게 납부(계좌이체 등 현금 외의 방법을 포함한다. 제3항에 따른 반환방법도 또한 같다)해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해당 수탁자에게 그 징수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를 해당 사용자에게 되돌려 주지 않는다. 다만, 제8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금액

야 한다. 다만, 취소·해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이용료 및 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이외의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개시일 전까지 납부 (제4항에 따른 반환 방법도 또한 같다)해야 한다.

-----  
-----  
----- 수탁자가  
----- 대행할 -----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은 그 취소 또는 변경신청서가  
해당 사용예정일을 기준으로 다  
음 각 호의 기간 전까지 제출된  
날에 해당하는 비율에 따라 계  
산한다.

1. 5일 전: 100분의 50
2. 3일 전: 100분의 20
3. 전일(前日): 100분의 10

⑤ (생략)

제11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10  
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위탁계획에  
대한 평창군의회(이 조에서 “의  
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은 후  
군 소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다.

②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탁운영자(이 조례에서 “수탁  
자”라 한다)와 위·수탁협약(이  
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  
야 한다.

③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위탁운영) ① -----  
-----  
-----  
-----  
-----  
-----  
----- 공개  
모집 방법에 따라 위탁운영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  
한다.

② ----- 제1항-----  
수탁자-----  
-----  
-----  
-----.

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의 시설**(제4조제2항 관련)

시설명	세부시설	면적	위치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 복지센터 - 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프로그램실, 창고 등	1,426.78m <sup>2</sup>	평창군 진부면 진별1길 144-19
	○ 어울림 체육센터 - 경기장, 다목적실, 주방 등	498.99m <sup>2</sup>	평창군 진부면 경강로 3817

[별표 2]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사용료**(제9조제2항 관련)

1. 장애인 복지센터

시설별	단 위	사 용 료(원)	비 고
프로그램 운영실	1일	50,000	
	오전	25,000	
	오후	25,000	
	야간	25,000	
회의실	1일	80,000	
	오전	40,000	
	오후	40,000	
	야간	40,000	

2. 어울림 체육센터

시설별	단 위	사 용 료(원)	비 고
체육센터	1일	50,000	
	오전	25,000	
	오후	25,000	
	야간	25,000	

<비고> 1일은 8시간, 오전·오후·야간은 각각 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해당시간을 일부 사용할 경우에도 그 시간 전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사용료 반환기준**(제9조제4항 관련)

반환기준	반환금액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전액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를 요청하여 인정되었을 경우	
사용예정 5일 전 취소	전액
사용예정 3일 전 취소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사용예정 1일 전 취소	100분의 20을 공제한 금액
당일 취소	100분의 50을 공제한 금액
사용예정일 이후 반환요청	전액 반환하지 않음

[별지 제1호서식]

##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 또는 단체명	주 소			
	단 체 명	연락처	사무실 : 자 택 :	
	성 명 (대표자)	핸드폰		
행 사 명				
사용목적 및 내용				
사 용 시 설		1. 프로그램운영실 2. 회의실 3. 어울림 체육센터		
사용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 일간)	시부터 시까지	사 용 횟 수	오전 : 회 오후 : 회 야간 : 회
첨부서류	행사 계획서 1부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div>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해지)신청서

신청인	주소	우편번호 :			
	단체명	전화	사무실		
	대표자		자택		
사용시설					
행사명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사용일시				
	사용시설				
	기타				
변경사유 (취소사유)					
<p>「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해지)을(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p> <p>평창군수 귀하</p>					

# 관계법령 발췌

## 1.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2.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시·군·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
- 2. 읍·면·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비용추계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센터 운영비(인건비 포함)
- 관련조문 : 제12조(경비보조 등)

##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장애인 복지센터 운영 지속적 추진

나. 추계결과(연간)

내역	산출기초	예산액(천원)	비고
합계		83,060	
장애인 복지센터 유지관리비	월 유지관리비(3,888천원) * 12개월	46,653	
장애인 복지센터 운영인건비	월 인건비(3,034천원) * 12개월	36,407	

다. 재원조달 방안 : 해당년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군비)

##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연락처	(033) 330 - 215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세 출		83,060	90,000	95,000	100,000	105,000	473,060
	장애인 복지센터 유지관리비	46,653	50,400	53,200	56,000	58,800	265,053
	장애인 복지센터 운영인건비	36,407	39,600	41,800	44,000	46,200	208,007
재원 조달		83,060	90,000	95,000	100,000	105,000	473,06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83,060	90,000	95,000	100,000	105,000	473,060
	지방세						
	세외수입						
	군비	83,060	90,000	95,000	100,000	105,000	473,06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